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8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[이성혁 의원 발의]

1. 제안이유

- 오산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광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·문화·관광·아동친화 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라.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
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0년 11월 2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이성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8-421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1월 17일

발의의원 : 이성혁 의원

찬성의원 :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성길용, 한은경 의원

□ 제안이유

- 오산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광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·문화·관광·아동친화 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 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1호, 제22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

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광장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광장문화복합공간”이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공공청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이념) 시의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·문화·관광·아동친화 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4조(조성 및 관리·운영 등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오산 시청 광장 및 청사 등을 활용하여 광장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광장문화복합공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장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.

④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사용 및 운영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의견청취 등) 시장은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이용 활성화)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】

관계법령발췌서

【지방자치법】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2. ~ 6. (생략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】

제7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

2.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